

[등록번호: 20150531]

[최초 등록일: 2015.06.25] www.sonsufood.com

[최종 등록일: 2024.11.08]

[수김밥]

정보공개서

[손수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손수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하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 13(문흥동)]

[대표전화(팩스)번호 : 062-263-749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스트 스 C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수김밥 |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 13(문흥동) | | | | | |
| 수수푸드 소수푸드 | 법인 설립등기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 대표팩스번호 | | |
| 2 | 개인사업자 2015.05.15 류도선 062-263- | | 263-7491 062-263-74 | | | | |
| | 법인등록번호 | _ | 사업자등 | 등록번호 230 | | -22-00054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해당없음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 · 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수김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 명 칭 | 수김밥 | 가정식 / 뷔페식 12가지 반찬 |
|-----------|---------|--------------------------|
| 상 호 | 수김밥 00점 | |
| 상표서비스표 | 手召出 |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940360000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784,379 | 378,142 | 406,236 | 1,349,047 | 92,022 | 58,229 |
| 2022년 | 740,820 | 293,517 | 447,303 | 1,359,763 | 67,671 | 41,066 |
| 2023년 | 557,072 | 60,442 | 496,630 | 1,335,114 | 58,707 | 44,326 |

※ 첨부 4 참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시리 | =l =l | 사업경력 | | | |
|-------|-----|------|------------|------|---------|--|--|
| | | 현 직위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 가맹사업 | 류도선 | 대표 | 2015.05~현재 | 대표 | 가맹본부 총괄 | | |
| 관련 임원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冷 (명) | 직원수(명) |
|----------------|-----|--------------|--------|
| 八名 | 상근 | 비상근 | 식선구(당) |
| *2023년 12월 31일 | 1 | 0 | 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일 등록일 | 출원번호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수김밥 | 서비스표 | 2016.08.16. 2017.04.11 | 4120160038260 4103940360000 | 유도선 | 2027.04.1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서비스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EDIATION AGENCY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수김밥] 가맹사업 현황

1. [수김밥] 을 시작한 날: 2015년 5월 15일

2. [수김밥]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손수푸드 | 손수김밥 | 유도선 | 2015.05.~2017.04 |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 13 (문흥동) |
| 손수푸드 | 수김밥 | 유도선 | 2017.04.~2018.04. 05 |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 13 (문흥동) |
| 손수푸드 | 수김밥 | 류도선 | 2018.04.06~현재 |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 13 (문흥동) |

※ 대표자 성명을 유도선에서 류도선으로 개명

3. [수김밥]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and the second received because it made it made it sometimes in the in- | |
| 스 기 미. | 인국해온류/대소경원 소분류 | -(주요상품) |
| 수김밥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한식 | 김밥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수김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2 | 2022.12.31. | | | 2023.12.31. | | |
|-----|-------------|------|------|-------------|------|------|-------------|------|------|
| 715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4 | 14 | 0 | 14 | 14 | 0 | 14 | 14 | 0 |
| 서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인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광주 | 10 | 10 | 0 | 10 | 10 | 0 | 10 | 10 | 0 |
| 대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충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남 | 4 | 4 | 0 | 4 | 4 | 0 | 4 | 4 | 0 |
| 경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바로 전 3년간 [수김밥]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16 | 0 | 0 | 2 | 1 | 14 |
| 2022 | 14 | 0 | 0 | 0 | 0 | 14 |
| 2023 | 14 | 1 | 0 | 1 | 0 | 14 |

6. [수김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수김밥]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 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워

[수김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2023년 말 | k | *2023년 <i>기</i> | ㅏ맹점사업 ス | 나 의 연간 평 | 영균 매출인 | 1 | |
|----|----------|--------------|---------------------------|----------------|---------------------------|--------|---------------------------|----------------|
| 지역 | 가맹점 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비고 |
| 전체 | 14 | 282,178 | 11,026 | 609,719 | 23,633 | 1,111 | 74 | * 1 곳 산정 제외 |
| 서울 | 0 | | | | | | | |
| 부산 | 0 | | | | | | | |
| 대구 | 0 | | | | | | | |
| 인천 | 0 | | | | | | | |
| 광주 | 10 | 292,478 | 10,047 | 609,719 | 23,633 | 1,111 | 74 | * 1 곳 산정 제외 |

| 대전 | 0 | | | | |
|----|---|--|--|--|---------|
| 울산 | 0 | | | | |
| 세종 | 0 | | | | |
| 경기 | 0 | | | | |
| 강원 | 0 | | | | |
| 충북 | 0 | | | | |
| 충남 | 0 | | | | |
| 전북 | 0 | | | | |
| 전남 | 4 | | | | * 5곳 미만 |
| 경북 | 0 | | | | |
| 경남 | 0 | | | | |
| 제주 | 0 | | | | |

- ※ 가맹점 매출액은 POS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ju fajjja

- ※ 위 매출 기재 내역은 가맹점이 배달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달 영업 매출까지 파악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가맹점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 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14개 | 2,342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구분 | 수단 기간 | |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년 | 부가세 미포함) | 비고 |
|----|--------|--------|--------|-----------|----------|-----|
| 丁七 | 구년 | 기산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112 |
| 광고 | - | | 2 | _ | - | |
| 판촉 | - | _ | _ | _ | - | |
| 합계 | _ | | 2 | _ | _ | |

FAIR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동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79 | 062-264-5041 |
| 농협은행 | 광주비엔날레지점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08 | 062-524-8183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손수푸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해당없음 | |
| 보험계약자 | भा उस्त | |
|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 |
| 보험기간 | | |
| 보험금액 | | |
| 보장범위 | | |
| 지급조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대상 | 의결번호 (사건번호) | 위반법령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
| _ | _ | _ | I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 최종 법원명 | 판결(선고)일자 | ['] 청구 취지 및 내용 |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
| 해당없음 | | | | | |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피고 | 사건번호 | 선고 법원 | 선고 일자 | 죄명 및 범죄사실 | 선고 내용 |
|------|------|-------|-------|--------------|-------|
| 해당없음 | | | | |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수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8,800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2,000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75,900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8,800 KQR | EA FAIR TRADE M | EDIATION AGENC | Y | |
| 가맹비 | 5,500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
| 교육비 | 3,300 | 교육시작 7일 이전 |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본사가 공급한 물품파손 등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

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0,800 |
| 가맹비 | 5,500 |
| 교육비 | 3,300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픈 시 필요항목을 제시한 내역이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품목이 아닌 가이드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간판 | 자율선택 | 5,500 | | 공사 3일전 | 시공 전 | 전면간판, 기타 사인물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 KOR 자율선택 | 33,000 | ADE MEDIA | 곳사 | | -해당품목: 목공, 전기조명, 설비, 타일, 도장공사 등 -별도공사: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기, 상하수도유입, 도시가스, 소방 등 |
| 초도물품 비용 | 자율선택 | 4,500 | _ | 납품 후 10일 | 계약 후 14일 이내 취소 시 |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과 수량을 구매 [첨부1 참조] |
| 주방집기 및 홀집기 | 가맹본부, (협력업체) 등 | 27,500 | _ | 공사 3일전 | 시공 전 | 주방집기 및 홀집기 내역[첨부2 참조] |
| 총계 | _ | 70,500 | 3,525 | _ | _ | 66,12㎡ (20평) 기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직영점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VAT 포함)]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62-263-7491)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9세 이상일 것 |
| |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수김밥]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주방집기 및 홀집기의 상세 내역은 소청부한 자료 [청부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총액 | 계약금 | 중도금(1) | 잔금 |
|--------|----|-----|--------|----|
| 금액(천원) | _ | _ | _ | _ |
| 납부일 | _ | _ | _ | _ |
| 비고 | _ | _ | _ | _ |

※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상표사용료 | 가맹본부 | 220 | 매월 10일 | | 소멸 |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별도협의 | 지정일자 | | |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별로 분담 등 | 지정일자 | |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 | 교육 실시 3일전 | | | 교육 필요시 지급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 별도협의 | 간판 변경 전 14일 이내 | Z 401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k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D 공사 7일 이전 | AGENCY | | 정보공개서 Ⅶ−1 참조 |
| 회계처리 비용 | - | _ | _ | _ | - | _ |
| POS 사용료 | (협력업체) | 월정료 | 지정일자 | | | 업체전화 (1661-3240)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5%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41조 참조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지급기한 경과시)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 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 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분기별 1회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월 1회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 매출관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원 1회 AGENCY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인테리어, 간판 | 해당시점에 협의하여 결정 | 공사 7일전 | 계약 취소 시 | 공사 시작시 반환불가 | 정보공개서 Ⅶ-1참조 |
| 주방집기 및 시설일체 | 해당시점에 협의하여 결정 | 공사 7일전 | 계약 취소 시 | 공사 시작시 반환불가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 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수김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손수푸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비와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수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필수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 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단위: 원)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비고 |
|--------|----|--------------------------------|---------------|----|
| _ | _ | _ | _ | _ |
| 계 계 | | | -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OREA FAIR TRA | 경제적 이익의 DE MEDIH용N AGEN | 금액 CY | 비고 |
|---------|-------|-------------------------|----------------------------|----------|----|
| _ | _ | - | _ | _ | _ |
| | | 계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관계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_ | _ | _ | _ | = | _ | |
| 계 | | | | | _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 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수김밥] 취급 전 메뉴(첨부3 참조)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위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수김밥 외 | 첨부3 참조 | 변경시 서면통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 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 총 영업표지 |
|--------------------------|----------------|--------|
| ० वर्ध में ० वर्गी गर्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김밥 및 분식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업 EME | DIATION AGENCY |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농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 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 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AGENCY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수김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 | _ | _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온라인 | - | - | _ | - |
| | _ | - | _ | _ |
| 홈쇼핑 | _ | _ | _ | _ |
| 전화권유판매 | _ | _ | _ | _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② | |
| *2023 | 100% | 0% | 0% |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 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
|-------|---------------------------|--------------------------|
| *2023 | 100% | 0% |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수김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7
- [수김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 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sim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NAGENCY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_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6조 ①항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6조 ①항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36조 ①항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6조 ①항 |
| ○ [수김밥]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6조 ①항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6조 ①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 | 37조 ①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된 경우 | 시 37조 ②항 |
|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7조 ②항 |
| 전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업 37조 ②항 |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 | 가 37조 ②항 |

| |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0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37조 ②항 |
| 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7조 ②항 |
| 0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37조 ②항 |
| Ó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7조 ②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 관련 계약조문 |
|--------------|-----------|---------|
| ○ 계약의 갱신의 경우 | 하그고저거래ㅈ저의 | 36조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 조건 | 환매 절차 | 비고 |
|--------|--|---------------------------|
| ○ 별도협의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법정 대리인)가 서면으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 로 상속,대리행사, | |

| | |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업무위탁 신청 → 당사 담당팀 |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시 가능 | _ |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 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수김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C | | -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수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07:00 ~ 22:00 | 휴무일: 설날(3일), 추석(3일), 여름휴가(2일)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

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 4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ㆍ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4항목)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본부 관리팀 | |
| 친절도(5항목)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2회/월 | 본부 관리팀 | |
| 품질 관리(7항목) | 담당자 대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AGENCY 2회/월 | 본부 관리팀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손수푸드와 귀하가 각 1부씩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수김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 H | 광고 | 부담 | 비율 | 비리 건의 | 비고 | |
|-------------|----------------------|--------------------------|--|--|---|--|
| 구분 | 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미끄 | |
| | 상품광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 대중매체 광고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광고비의 30% |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광고 세속 공고 → 가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 | 할인행사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판촉행사 | 증정행사 | 증정상품 출하가 50% | 증정상품 출하가 50% | 7// ~ 1리주정의 | " | |
| | 팜플렛 등 제작 | 판촉물 제작비용 50% | 판촉물 제작비용 50% | MEDIATION AGENÇY | " | |
| | 기타 개별행사 | (2015년 행사별로 20~50민 | 라 유동적 [의 경우 가맹점당 [원 부담] 맹정부담액 | " 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해 | <i>"</i> 직정 부기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 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 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 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ATION AGENCY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 합계 | | 47일 내외 | |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계약서 제공 | D-46~45 계약 체결 14일 전 |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13~14쪽 참조]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 가맹금 예치 | - 은행에 가맹금 예치 🧶 | D-29(1일) |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
| 점포 개설 | - 가맹점[개설] 및 영업시작 ATION A | GENCY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 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기교회거에서 기 0 | 가맹본부 부담 | 가맹본부 부담 | 키그저키 | 비용부담 | 비고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비용항목 | 비용비율 | 지급절차 | 제외사유 | 비끄 |
| O점포의 시설, 장 | ㅇ간판교체 비용 | O점포의 확장 또는 | ㅇ가맹점사업자의 | ○점포환경개선일 | |
| 비, 인테리어 | 이인테라어 광배용 | 이전을 수반하지 | 비용 청구(공사 | 로부터 3년 이내 | |
| 등의 노후화가 | (장바잡기의 교체 | 않는 점포환경개선 | 계약서 등 공사 | 에 가맹본부의 | |
| 객관적으로 인정되 | 비용을 제외한 | : 20% | 비용을 증빙할 | 책임없는 시유로 | |
| 는경우 | 실내건축공사에 | O점포의 확장 또는 | 수 있는 서류 첨뷔 → 90일 이내에 | 계약이 종료(계약 | |
| 0위생이나 안전의 | 소요되는 알웨 배용 | 이전을 수반하는 | 가맹본부 부담액을 | 의 해자 영업양도 | |
| 결함으로 인하여 | 단, 가맹사업의 | 점포환경개선 | 가맹점사업자에게 | 포함되는 경우 | |
| 가맹업의 통일성을 | 통일성과 무관하게 | | 지급 | 가맹본부 부담 | |
| 유지하기 어렵거나 | 가맹점사업자가 | IR TRADE MEDIATION | N AGENCY (단, 가맹본부와 | 액 중 잔여기간 | |
| 정상적인 영업에 | 추가 공사를 실시 | | 가맹점사업자간 | 에 비례하는 부 | |
| 현저한 지장을 | 함에 따라 소요되는 | | 별도의 합의가 있는 | 담액은 지급하지 | |
| 주는 경우 | 비용은 제외) | | 경우 1년의 범위내 | 아니하거나 이미 | |
| | | | 에서 분할지급 기능) | 지급한 경우에는 | |
| | | | ㅇ 가 맹 점 사 업 자 | 환수 가능 | |
| | | | 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 | |
| | | | 가 지정한 자 | | |
| | | | 를 통하여 점 | | |
| | | | 포환경개선을 | | |
| | | | 한 경우에는 | | |
| | | | 점포환경개선 | | |
| | | | 이 끝난 날부 | | |
| | | | 터 90일 이내 | | |
| | | | 에 가맹본부 | | |
| | | | 부담액을 지급 | | |
| | | | <분할지급 시 절차> | | |
| | | | ㅇ가맹점사업자의 | | |
| | | | | | |

| 24 22/22 | |
|--------------|--|
| 비용 청구(공사 | |
| 계약서 등 공사 | |
| 비용을 증빙할 | |
| 수 있는 서류 챔!) | |
| → 3차에 걸쳐 | |
| 가맹본부 부담액을 | |
| 분할 지급 | |
| (1차 : 청구일로부터 | |
| 90일 이내, | |
| 총 부담액의 30%, | |
| 2차 : 1차 지급일 | |
| 로부터 60일 이내, | |
| 총 부담액의 30%, | |
| 3차 : 2차 지급일 | |
| 로부터 60일 이내, | |
| 총 부담액의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7]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 문의: 관리팀 (062-263-7491) |

| |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수김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신용명 또는 내용 | 신용제공자 | 금액 | 신용 형태 | 신용제공 조건 |
|------------------|-------|------|-------|---------|
| 자금 지원 | | 해당없음 | | |
|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 | " | | |
| | | | A |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_ | - | _ | - | - | _ |

※ "해당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수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기본 교육 | 운영교육, 조리교육, 직원관리교육, 서비스교육 | 매장실습교 육 |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전 7일까지 (최소 30일) | 필수교육 |
| 정기 교육 | 신메뉴 조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 오픈 후 매년 12월 | 필수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수김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기본 교육 | 30일 | 3,300 | -최초 계약시 이수(8시간/일) -경력에 따라 기간 및 시간은 조정가능 |
| 정기 교육 | 1일 | L공경 카래 | -오픈 후 매년 1회 12월 (최소 3시간/일) -가맹본부에서 일정은 별도 공지함 |

C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4장 19조에 따라 1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4장 19조에 따라 1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 | _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_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_ | _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62-263-74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 초도물품 내역]

(단위 : 원, VAT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초도물품은 납품 당시의 시세로 하며 점주 희망 시 점주가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2 : 주방집기 및 홀집기 내역]

(단위 : 원, VAT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 3 : 메뉴 상품별 권장가격 내역]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김투 | 마류 마류 | 변경시 서면통지 | |
| 수김밥 | 2,000 | " | |
| 치즈김밥 | 2,500 | " | |
| 김치김밥 | 2,500 | " | |
| 참치김밥 | 2,500 | " | |
| 참치고추김밥 | 3,000 | " | |
| 참치김치김밥 | 3,000 | " | |
| 돈가스김밥 | 3,000 | n, | |
| 면 | 류 | | |
| 라면 | 3,000 | n, | |
| 떡라면 | 3,500 | <i>"</i> | |
| 치즈라면 | 3,500 | n n | |
| 김치라면 | 3,500 | " | |
| 만두라면 | 3,500 | | |
| 우동 | KOREA FAIR TRADE M 3,000 | EDIATION AGENCY | |
| 쫄면 | 4,500 | " | |
| 잔치국수 | 5,000 | n, | |
| 비빔국수 | 5,000 | " | |
| 바지락칼국수 | 5,000 | n, | |
| 나가사끼짬뽕 | 6,000 | " | |
| 분/ | 식류 | | |
| 계란오뎅 | 3,000 | n | |
| 떡볶이 | 3,000 | " | |
| 쫄떡볶이 | 3,500 | n, | |
| 라볶이 | 3,500 | " | |
| 치즈떡볶이 | 4,000 | " | |
| 지즈라볶이 | 4,000 | " | |

| 고기만두 김치만두 | 3,000 | " | |
|---------------------------------------|--------------|-----------------|--|
| 김치만두 | | | |
| | 3,000 | " | |
| 물만두 | 3,000 | " | |
| 군만두 | 3,000 | n, | |
| 손수왕만두 | 4,000 | n | |
| 볶음 | - 밥 | | |
| 야채볶음밥 | 5,000 | n | |
| 김치볶음밥 | 5,000 | n | |
| 새우볶음밥 | 5,000 | n | |
| 참치볶음밥 | 5,500 | n | |
| 소고기볶음밥 | 5,500 | n | |
| 참치,김치볶음밥 | 5,500 | n | |
| 오므라이스 | 5,500 | n | |
| 김치오므라이스 | 5,500 | n | |
| 새우오므라이스 | 5,500 | n | |
| 참치오므라이스 | 6,000 | | |
| 참치,김치오므라이스 | KOREA F6,000 | EDIATION AGENCY | |
| 치즈오므라이스 | 6,000 | EDIATION AGENCT | |
| · · · · · · · · · · · · · · · · · · · | 류 | | |
| 푸짐한양푼이비빔밥 | 5,000 | n, | |
| 참치양푼이비빔밥 | 5,000 | n, | |
| 돌솥비빔밥 | 5,500 | " | |
| 참치돌솥비빔밥 | 5,500 | n, | |
| 된장찌개 | 5,000 | " | |
| 김치찌개 | 5,000 | " | |
| 참치김치찌개 | 5,000 | " | |
| 오뎅김치찌개 | 5,000 | " | |
| 순두부찌개 | 5,000 | " | |
| 애호박찌개 | 5,500 | " | |
| 육개장 | 5,500 | " | |
| 부대찌개 | 5,500 | n | |

| 짬뽕국밥 5,500 " 뚝배기불고기 6,000 " 철판오삼불고기 6,500 " 덮밥류 " 세육덮밥 6,000 " 참치,김치덮밥 6,000 " 불고기덮밥 6,000 " 잡채밥 6,000 " 논가스류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시킨가스 6,000 " 역국 5,000 " 멸내면 5,000 " 비비생면 5,000 " 석리태콩물국수 6,000 " | | | | |
|---|------------|--------------------|----|--|
| 절판오삼불고기 6,500 " | 짬뽕국밥 | 5,500 | n, | |
| 정보답 6,000 " 오징어덮밥 6,000 " 참지,김치덮밥 6,000 " 불고기덮밥 6,000 " 합채밥 6,000 " 수제등심돈가스류 5,5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차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 맥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ADE MEDIATION AGENCY | 뚝배기불고기 | 6,000 | n, | |
| 제육덮밥 6,000 " 오징어덮밥 6,000 " 참치,김치덮밥 6,000 " 불고기덮밥 6,000 " 잡채밥 6,000 " 돈가스류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치즈돈가스 6,0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딱국 5,000 " 말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입무냉국수 KOREAF 5,000 ADE MEDIATION AG; NCY | 철판오삼불고기 | 6,500 | n | |
| 오징어덮밥 6,000 " 참치,김치덮밥 6,000 " 불고기덮밥 6,000 " 장채밥 6,000 " 논가스류 "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시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 딱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열무냉국수 **COREA F 5,000 ADE MEDIATION AC NOCY | 덮밥류 | | | |
| 참치,김치덮밥 6,000 " 불고기덮밥 6,000 " 잡채밥 6,000 " ETY스류 수제등심돈가스류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딱국 5,000 " 딸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OREAF 5,000 ADE MEDIATION AGENCY | 제육덮밥 | 6,000 | n, | |
| 불고기덮밥 6,000 " 잡채밥 6,000 " E가스류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치즈돈가스 6,0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딱국 5,000 " 딱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얼무냉국수 KOREA F5,000 ADE MEDIATION AG,NCY | 오징어덮밥 | 6,000 | n, | |
| 집채밥 6,000 " ET→스류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치즈돈가스 6,0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딱국 5,000 " 딱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열무냉국수 KOREAF 5,000 ADE MEDIATION AGENCY | 참치,김치덮밥 | 6,000 | n, | |
| 돈가스류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치즈돈가스 6,0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 불고기덮밥 | 6,000 | n, | |
| 수제등심돈가스 5,500 " 수제치즈돈가스 6,000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 떡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열무냉국수 KOREA F 5,000 ADE MEDIATION AG NCY | 잡채밥 | 6,000 | " | |
| 수제치즈돈가스6,000"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6,000"치킨가스6,000"기타계절메뉴""떡국5,000"물냉면5,000"비빔냉면5,000"얼무냉국수KOREA F 5,000 ADE MEDIATION AGENCY | 돈가스류 | | | |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6,000 " 치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딱국 5,000 " 딱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얼무냉국수 KOREAF5,000 ADE MEDIATION AG,NCY | 수제등심돈가스 | 5,500 | " | |
| 지킨가스 6,000 " 기타계절메뉴 | 수제치즈돈가스 | 6,000 | n | |
| 기타계절메뉴 | 수제고구마치즈돈가스 | 6,000 | " | |
| 떡국 5,000 " 떡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열무냉국수 KOREA F 5,000 ADE MEDIATION AG, NCY | 치킨가스 | 6,000 | n, | |
| 떨만두국 5,000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열무냉국수 KOREAF 5,000 ADE MEDIATION AG, NCY | 기타계절메뉴 | | | |
| 물냉면 5,000 " 비빔냉면 5,000 " 열무냉국수 KOREA F 5,000 ADE MEDIATION AG "NCY | 떡국 | 5,000 | " | |
| 비빔냉면 5,000 / 디소 (*) 열무냉국수 KOREA F 5,000 ADE MEDIATION AG , NCY | 떡만두국 | 5,000 | " | |
| 열무냉국수 KOREA F6,000 ADE MEDIATION AGENCY | 물냉면 | 5,000 | " | |
| 열무냉국수 KOREA F6,000 ADE MEDIATION AGENCY | 비빔냉면 | 5,000 | | |
| 서리태콩물국수 6,000 " | 열무냉국수 | KOREA F5,000 ADE M | | |
| | 서리태콩물국수 | 6,000 | " | |

[첨부 4 :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